한국환경공단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수출입폐기물 현장정보 전송제도



2025. 07

소 속 부 서	한국환경공단 사업장폐기물처 수출입폐기물관리부

추진배경

① 폐기물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정기관의 강력한 시정 요구

- '15년 공공기관 건설폐기물 **처리 비리 적발** 등 구조적 비리 적발 및 제도개선 요구(국조실)
  - 공공공사에서 공무원이 공인인증서 무단유출 →폐기물처리업체가 처리량 조작
- '18년 지정폐기물 **불법처리**(폐유 등 1,450톤) 적발(중앙환경사범수사단)

② 폐기물 무단 방치·투기·매립 사례 계기로 국민적 관심 증가

- '18년 필리핀 불법 폐기물 수출 사건 이후, 수출입폐기물의 관리강화 요구
- '19년 의성 쓰레기산 등 폐기물 무단 방치투기 사례 발생
  - 허가받은 물량의 80배 이상(무단방치) →'19년 국비 투입(대집행)하여 처리

③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 및 감시 인력·체계 미비로 현장관리 한계

- 폐기물 처리과정 전체를 업체의 자진 신고에 의존
-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 삼자가 공모하여 인계정보 허위입력시 확인 불가
- 배출,운반,처리업체 약 40만개업체(올바로) 담당공무원 현장관리 한계

추진배경

쓰레기 5천톤 필리핀에 위장수출?…"한국, 되가져가라"

1분 이내 입력 2018.11.16 21:04 수정 2018.11.16 22:37

김지아 기자

[앵커]

대규모 불법 폐기물이 필리핀에서 발견돼 현지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보낸 것인데요. 5000t에 달하는 폐기물에는 다쓴 배터리와 전자제품, 기저귀 등이 들어 있었는데, 쓰레기가 아닌 플라스틱 합성조각으로 신고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필리핀 정부와 환경단체들은 쓰레기를 다시 한국으로 가져가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 기사 전문 (http://bit.ly/2zc6rIT)

https://youtu.be/dX-Pg85OxOo?si=i4edEZfA0Ttajpez

수출입폐기물 현장정보 전송제도 개요

01

» 수출입폐기물 현장정보 전송제도란 ?



☑ 폐기물을 수출·수입 또는 처리할 때,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함께 폐기물의 이동에 관한 현장정보(위치정보, 계량값, 영상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여,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

※ (시행시기) 건설폐기물('22.10) → 지정폐기물('23.10) → 사업장일반, 수출입폐기물('24.10)

“ 관련 규정 ”

☑ (법령)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및 [별표 6]

☑ (고시)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24.10.1 시행)

수출입폐기물 현장정보 전송제도

02



현장정보 전송 의무대상자

☑ (대상자) 폐기물을 수출, 수입 또는 처리하는 자

-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
-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
-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
-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

☑ (제외대상)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시험·연구목적)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본문 단서의 폐기물을 수출입하는 자

수출입폐기물 현장정보 전송제도

03



현장정보 종류

- (위치정보) 운반 차량의 이동 경로(위도와 경도)를 시간단위로 표기한 값

  ※ 컨테이너 운송차량은 위치정보 대신 사업장과 수출입항 출도착시의 컨테이너 봉인장치(봉인번호 포함) 및 주변사진 등록(추가설명)

- (계량값) 폐기물을 수출입하는 자의 사업장에 설치된 계량시설*에서 측정한 계량값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전단에 따라 계량시설을 설치한 자로 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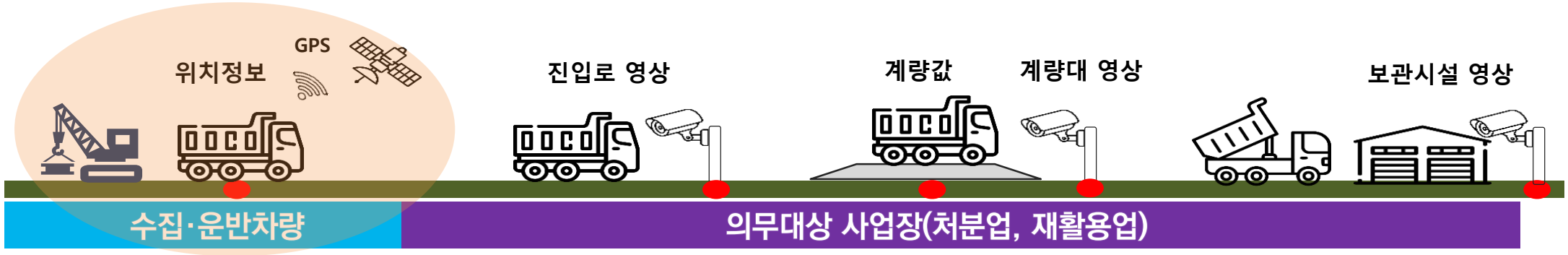
- (영상정보) 진입로, 계량시설 및 보관장소 영상정보

  ※ 컨테이너 운송차량의 경우, 진입로 및 계량시설의 영상정보는 전면부 및 후면부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정지영상을 뜻함. 다만, 진입로 영상정보는 수출하는 자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보관장소 영상정보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출입폐기물 현장정보 전송제도

전송장치 종류 및 설치

구분	전송장치 설치			비 고
	장비종류	설치장소	대수	
수집·운반차량	차량용 GPS단말기	수집·운반차량	1대	
의무대상 사업장 (처분업, 재활용업)	1. 자동전송단말기 (PC)	사무실	1대	자동전송프로그램 설치 필요
	2.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	진입로	1대 이상	
		계량시설	1대 이상	계량시설 설치의무자
		보관장소	1대 이상	



수출입폐기물 현장정보 전송제도

차량용 GPS단말기

구분		전용단말기형 (펌웨어형)		프로그램설치형 (SW구동형)	이동통신단말기 (어플)
		고정형	탈부착형	탈부착형	탈부착형
배출자	자가 운반차량	✓	✓	✓	✓
수집·운반업, 처분업, 재활용업	전용차량	✓	X	X	X
	임시차량	✓	✓	✓	X
제품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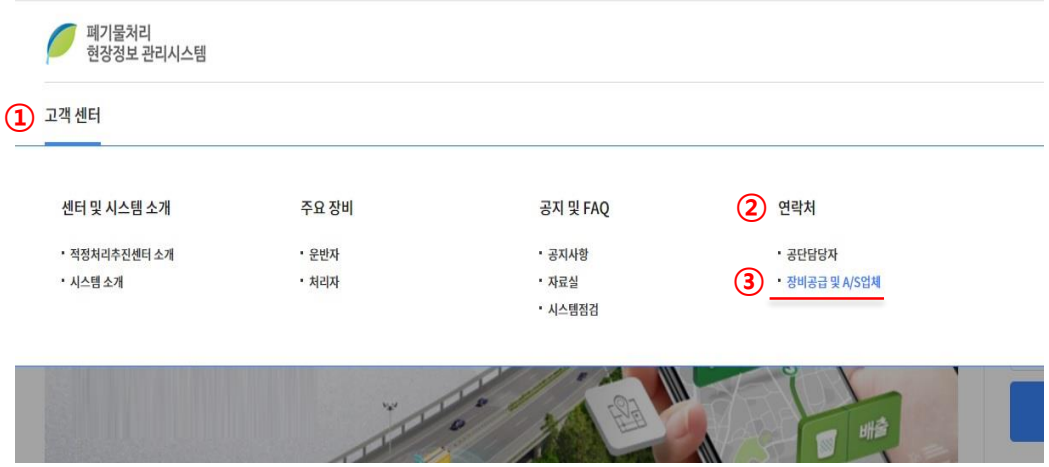
전용단말기형(펌웨어형)	하드웨어에 GPS 프로그램이 설치된 '일체형 제품'으로 화면없이 전원공급만으로 작동하며, 전원공급 조작여부에 따라 고정형과 탈부착형으로 구분 * (고정형) 휴즈박스 등 내부 전원선에 연결, (탈부착형) 시가잭, USB 등
프로그램 설치형(S/W구동형)	한국환경공단이 제작·배포한 전송프로그램을 안드로이드 OS 5.1 이상 버전의 태플릿PC, 네비게이션 등 단말기에 설치
이동통신단말기(어플 설치)	한국환경공단이 배포한 '현장정보' 어플을 앱마켓에서 내려받아 설치

수출입폐기물 현장정보 전송제도

장비공급 및 AS업체 현황

현장정보관리시스템 (https://www.allbaro.or.kr/siren)

- GPS 13개 업체 16개 품목
- 자동전송단말기 및 CCTV 펙키지 상품 3개업체
  (에스원, 에스케이렌터카, 이알피코리아)



장비공급 및 A/S업체

수집.운반하는 자의 차량용단말기 설치

차량용단말기(펌웨어형) 공급업체(2022.12.)

공급업체명	연락처	단말기 제조사 / 장비모델	이동통신사업자 증명서 또는 이동통신 약정내역서	홈페이지
(주)에스원 (208-81-13302)	1544-3112(내선2번)	에스원 / AMT5742	기간통신사업자 (에스원)	보기
(주)마크링크 (541-87-01122)	031-8040-9424	markLink / MD-T60KL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LGU+)	보기
주식회사 유비퍼스트대원 (220-87-34105)	1566-6458	유비퍼스트 / UTM1	이동통신약정 (SKT)	보기
에스케이렌터카(주) (113-81-32864)	02-6310-4477	SK렌터카 / M-01	이동통신약정 (SKT)	보기
(주)스카이오토넷 (264-81-23208)	1533-2331	SKYAUTONET / SKY_GPS	이동통신약정 (SKT)	보기
(주)케이티 (102-81-42945)	1811-6785	멕서스 / MXR-40KD	기간통신사업자 (KT)	
(주)씨앤에스링크 (214-86-68113)	070-8786-6459	CNSLink / E_CNM-G100	이동통신약정 (LGU+)	보기
(주)엔트랙 (271-88-01142)	1566-7304	우리넷 / WD-L420L	이동통신약정 (LG HelloVision)	보기
(주)이알피코리아 (828-86-01003)	041-542-6699	IoTPLEX / MSA-T200E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LGU+)	보기
(주)아이오티플렉스 (256-81-00086)	1599-2737	IoTPLEX / MSA-T200E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LGU+)	보기
(주)디티지코리아 (591-86-00868)	1899-8773	우리넷 / WD-L420K	이동통신약정 (KT)	보기
(주)디티지코리아 (591-86-00868)	1899-8773	우리넷 / WD-L420K	이동통신약정 (LGU+)	보기

장비공급 및 AS업체현황	(경로)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관리시스템 – 고객센터 – 연락처 – 장비공급 및 A/S 업체

수출입폐기물 현장정보 전송제도

구분			대상 및 전송정보	비고
계 량 값			□ **수출입하는 자** ※ 계량시설 설치의무자 한정	즉시
위 치 정 보			□ **수출입하는 자** ※ 컨테이너 운송차량 제외	실시간
영상정보	계량시설		□ **수출입하는 자** 컨테이너 운송차량은 전면과 후면부 차량번호 포함 정지영상 ※ 계량시설 설치의무자 한정	즉시
	진입로	정지영상의 경우	□ **수출입하는 자** 수술입 컨테이너 운송차량은 전면과 후면부 차량번호 포함 정지영상	즉시
		동영상 대체 시	□ **수출입하는 자** 영업시간 6개월 이상 저장	-
	보관시설		□ **수출입하는 자** ※ 인허가상 보관량 "0" 또는 보관장소 없음 제외	영업시간 기준 1시간
수출입항 컨테이너 밀폐여부(봉인장치 번호) 및 주변사진			□ **수출입하는 자** 수출: 출발 사업장 및 수출항 수입: 수입항 및 도착 사업장 ※ 컨테이너 운송차량 한정	2일 이내

☑ 영업시간(營業時間) : 법이나 관습에 의하여 영업을 하도록 정해진 시간. 영업하기 위하여 점포의 문을 연 때부터 닫을 때까지의 시간

☑ 영업일(營業日) : 문을 열고 영업을 하는날

수출입폐기물 현장정보 전송제도

☑ 컨테이너 봉인장치 및 주변사진

“수출”

사업장 » 수출항

01 컨테이너 밀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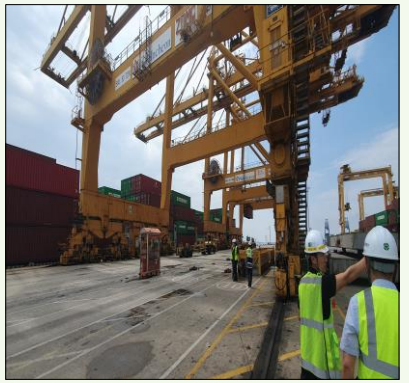
02 주변사진



03 컨테이너 밀폐



04 주변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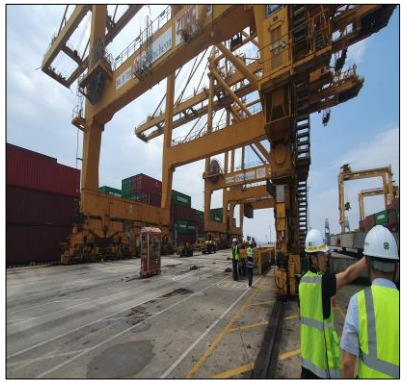
“수입”

수입항 » 사업장

01 컨테이너 밀폐



02 주변사진



03 컨테이너 밀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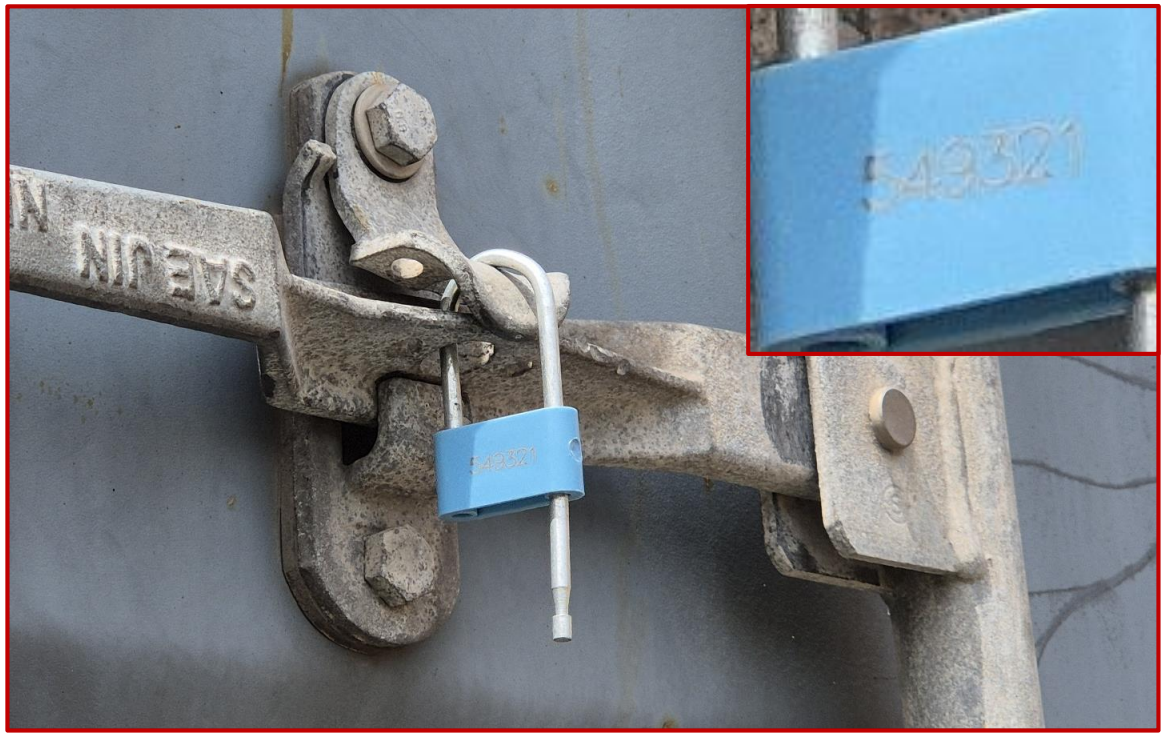
04 주변사진



수출입폐기물 현장정보 전송제도

☑ 컨테이너 봉인장치 및 주변사진

01 컨테이너 밀폐 여부(봉인장치 번호가 보이도록)



02 주변사진 (주변전경이 보이도록)



수출입폐기물 현장정보 전송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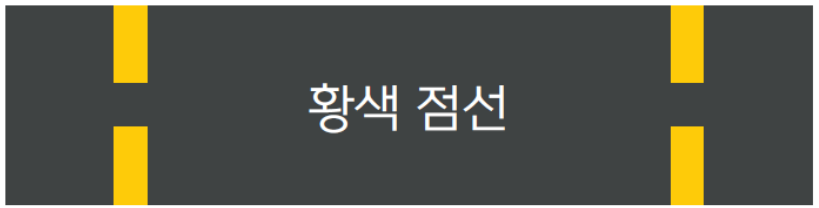
항만 및 터미널이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안시설로 지정된 경우 사진촬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항만 근처, 안전하게 컨테이너 운송차량이 정차가 가능한 곳에서 촬영한 사진을 전송

* 도로 노면 흰색실선: 주차 및 정차 가능, 황색점선: 주차금지, 정차가능

▸ 노면 표시에 따른 주 · 정차 가능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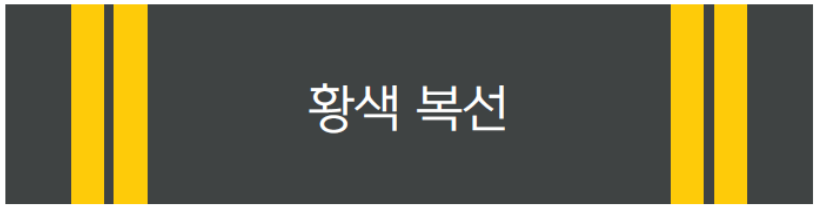
주·정차 가능



주차 금지, 정차 가능 (주차 탄력 허용)



주·정차 금지 (주차 탄력 허용)



주·정차 절대 금지

사례

통관 전 수입화물이 검사, 검역단계에서 불합격되어 폐기 또는 반송처분 명령을 받아 국내에서 폐기 처리하는 경우



관세법 제160조(장치물품의 폐기)에 따라 폐기물 처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경우 보세창고가 배출자가 되고 보세창고에서 폐기제품(일반·지정)을 적출하여 폐기물수집·운반차량으로 운반 및 최종처분업체에서 소각처리

※ [관련법령] 관세법 제160조(장치물품의 폐기) 제1항에 따라 부패·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부패·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부패, 변질, 손상, 실용시효의 경과, 물성의 변화 등으로 상품가치를 상실한 경우
2. 상품가치는 있으나 용도가 한정되어 있어 실용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
3. 관세법 제208조(매각대상 및 매각절차)에 따라 매각하려 하였으나 매각되지 아니하고 국고귀속의 실익이 없는 경우

수출입폐기물 현장정보 전송제도(요약)

개 요

☑ 수출입폐기물의 전 과정 실시간 관리 및 적정처리를 위해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도입(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18조의5)

* 수출입폐기물 현장정보 전송 시행을 위해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및 시행

- 적용대상 : 수출입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 운반자, 처리자(처분 및 재활용업)
- 현장정보 종류 :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제17조의5)

운영방법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현장정보 전송방법과 유사하며, 주요 특이사항은 아래와 같음

- 차량용 GPS 단말기 : 차량용단말기(GPS)를 통해 수집되는 실시간 위치정보. 다만, 수출입폐기물을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실시간 위치정보 대신 출발하는 때 및 도착한 때 사진 업로드
- 계량값(폐기물 중량값) : 차량총중량에서 차량과 컨테이너 중량을 뺀 값

유의사항

☑ 현장정보 전송 미이행에 따른 벌칙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29조의2제3호)

- 현장정보 전송 이행을 위한 준비사항이 미비할 경우, 수출입 인·허가 및 요건확인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수출입폐기물 현장정보 전송제도(사전질의)

☑ 1. 출발지와 도착지의 봉인장치, 주변사진상에 일자 및 시간 (워터마크) 표시본으로 업로드하여야 하나? 2. 업로드 후 등록/수정 칸에 "수정기한 만료" 표기시 오류있다는 건가?

A) “수정기한 만료”는 인계서 작성 후 공휴일 제외하고 2일이 지나서 수정할 기한이 만료된 현장정보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오류는 아니고 기한만료를 뜻하고 있습니다.

☑ 2. 폐기물 수출 시 계근해야 하는 사업장에서 컨테이너차량의 경우 계근대사용이 어려울 경우 공인계근대를 이용하고 있는데 공인계근표 올리는 방법은

A)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3항에 따라 계량시설을 설치한 자는 사업장에 설치된 계량시설에서 측정한 계량값 및 해당 계량시설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를 폐기물을 수출입할 때 마다 전송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계량시설 여건상 컨테이너 운송차량의 계량이 불가할 경우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의2(현장정보 전송방법 등) 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예외적 전송방법 인정신청서를 미리 센터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공인계량소의 계량전표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폐기물 현장정보 전송제도(사전질의)

☑ 3. 수출 시 현장정보 전송 내용 ?

A) 컨테이너 운송차량의 경우, 진입로 및 계량시설의 영상정보는 전면부 및 후면부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정지영상을 뜻함.

다만, 수출 시 진입로 영상정보는 수출하는 자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보관장소 영상정보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한국환경공단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질의응답

제도 안내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수출입관리부 과장 심종서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수출입관리부 대리 변유정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자원순환 촉진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 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 (한국환경공단법:법률 제13879호)
K-eco aims to contribute to eco-friendly development of Korea through the effective operation of greenhouse gas reduction programs to prevent environmental pollution, improve the environment, facilitate resource recycling and respond to climate change. (Law No. 13879, the K-eco Act)

한국환경공단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감사합니다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자원순환 촉진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 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 (한국환경공단법:법률 제13879호)
K-eco aims to contribute to eco-friendly development of Korea through the effective operation of greenhouse gas reduction programs to prevent environmental pollution, improve the environment, facilitate resource recycling and respond to climate change. (Law No. 13879, the K-eco Act)